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민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 중단,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민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67호, 2020. 1.21. 공포, 2020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수준,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27. ~ 5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“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나목 중 “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73조의2 제목 “(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)”을 “(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)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3 제목 “(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”을 “(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4를 제73조의6으로 하고, 제73조의4와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)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.

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, 국민의 재산·소득 분포 현황,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

제73조의5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

①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(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)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의6제1항 중 “법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5”로 한다.

제7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해외 신용등급이 A-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

제113조의2제1항제3의2호 중 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3,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3조의2, 제73조의3, 제73조의4, 제73조의5, 제73조의6 및 제113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신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「국민연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 1.~3. (생략) 4.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. 가. <u>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</u> 나. <u>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</u> 다. (생략) 제73조의2(<u>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</u>) ①·② (생략)	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----- ----- 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가. 3개월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3개월 ----- ----- 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제73조의2(<u>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3(<u>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</u>) ①~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73조의3(<u>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</u>) ①~⑥ (현행과 같음) 제73조의4(<u>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</u>)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.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, 국민의 재산·소득 분포 현황,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73조의5(<u>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</u>) ①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3조의4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. 1.~4. (생 략)	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(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)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73조의6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① ----- 제100조의5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4. (현행과 같음)		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·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7. (생 략) <신 설> 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 략) 1.~3. (생 략) 3의2.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.~7. (생 략)	② ----- 제100조의5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 ----- ----- 1.~7. (현행과 같음) 8. 해외 신용등급이 A-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3의2. 법 제100조의3,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----- ----- 4.~7. (현행과 같음)
---	---	--	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04